

공식입장문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및 계약방식에 대한 최근 의혹제기(“특혜” · “불공정” · “비밀” · “짜고치는 고스톱” 등)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입장을 밝힘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의 특수성 (참고1.)

- 글로벌 도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해 푸둥신구·싱가포르·홍콩 등에 비견할만한 세계적인 비즈니스 및 첨단산업 도시조성을 위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임

경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과 글로벌기업, 세계적인 시설, 대규모개발사업을 수의계약,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특례 등을 허용하는 특별법임.

- 경자법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개발과 계약의 방식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의 틀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만나고 협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권장되는 투자유치활동이며,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100% 순수외투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내 투자자와 함께 합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내외 투자자와 함께 대화하고, 협상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적 과정이라 할 것임.

- 통상 투자유치는 투자자의 문의나 상담으로 시작되어 협상과 계약 순으로 이어지거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먼저 유치 타겟기업이나 시설을 설정하고 접촉하여 유치하게 됨.
- 투자의향과 유치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의무 협약)하에서 MOU를 체결하고, 협상이 시작됨.

투자자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공개경쟁방식의 최고가 입찰이나 공모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절차로 우선 진행 된다는 것임.

※ MOU는 ①단순 상호협력을 위한 MOU와 ②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MOU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MOU는 ②를 의미함.

- 위 두가지 사실은, 투자유치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자주 '만나' 줄다리기 협상을 하여야 함을 뜻하며,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단순한 공동주택과 상가 부지의 매각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과 시설 유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음.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 방식과 성과 (참고2.)

- 인천경제청이 경자법에 근거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한 사례와 적용한 방식은 아래와 같음. 이 세가지 방식은 경자법이 허용하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

- 연동형 개발방식(목적시설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부여 방식)을 활용한 국제도시 인프라 및 국제도시 특화시설 구축
 - ※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1단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아트센터인천, 연세대 및 세브란스병원,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 수익계약 방식을 통한 효율적 투자유치
 - ※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하나금융타운, 잭니클라우스, 파라다이스시티, 채드워국제학교 등
- 민간제안 방식(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도시개발하는 방식)은 매력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임
 - ※ 맨해튼 허드슨야드, 일본 롯본기 힐즈, 싱가포르 베이에어리아 등

□ **최근 IFEZ를 둘러싼 논란** (참고3.)

- 특혜·불공정·‘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
 - 수익계약은 경자법에 보장된 적법한 투자유치 방식이며 내부 검토, 전문가(변호사·회계사) 검토,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 등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초 제안자가 있는 사업이 수익계약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더 좋은 제안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제안공모이며 민간제안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방식임
 - 만약, 우수한 민간 제안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제안공모를 불허한다면 수익계약 방식 이외에는 제안자체를 거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의혹제기 등 논란에 따른 우려** (참고3.)

- 투자유치 활동 및 민간 제안 위축
 - 과도한 의혹제기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 민간제안 위축으로 창의적·효율적인 도시개발 동력 상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력화 우려
 - 경자법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시개발 방식과 동일해짐
- 비밀유지 협약이 체결된 잠재 투자자의 이탈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 신뢰도 저하
- 사실이 아닌 정보의 확산에 따른 주민간 갈등 심화

□ **IFEZ의 비전과 역할** (참고4.)

- IFEZ는 국제도시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함
 - 경자법이 허용하는 방식인 연동형 개발, 수의계약, 적극적인 민간 제안 유치 등은 인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임
 - 이같은 방식은 개청 20주년을 맞는 IFEZ가 거둔 성과 및 인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IFEZ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함

□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참고5.)

- 최근의 과도한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수년간 계획·추진 되어온 투자유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IFEZ가 경자법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글로벌 도시를 건설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경제청은 시민의견 경청과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동아일보 2023.8.28. 조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

2002년 말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유치의 경쟁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양상이 바뀌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정학적 강점과 인천공항 등의 교통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모델로 삼고 있고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선전, 푸둥과 같은 도시도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유연한 투자유치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법 역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 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항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의 유치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의 4, 경제자유구역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⑥항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수익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타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의료기관 특례’, ‘외국교육기관의 특례’, ‘외국인전용 카지노 특례’ 등 매우 강력한 특혜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면적(남한)의 약 0.3%인 매우 특별한 목적과 개발방식을 가진 구역으로서 지자체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②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③ 글로벌 교육도시, ④ 문화·레저허브, ⑤ 스마트시티 등 5대 목표를 선언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연동형 개발 방식에 대하여

문제는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공익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 인프라가 될 시설들은 대부분 초기투자 비용이 크고 영업이익은 적은 시설들입니다. 박물관, 문화예술공연시설, 컨벤션센터, 학교, 병원, 대규모 리조트, 랜드마크 건축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도입을 경제청 예산으로 진행하려 하여도 사업 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우며 행정절차와 소요시간 및 운영 주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방식 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연동형 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연동형 개발방식이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사업권 부여 및 토지가 감액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환매 특약, 수익률 제한, 이사과건, 정기적 회계감사 등의 강행규정과 약정체결을 통해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연동형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례는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인천경제자유구역 연동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사업시행자	목적사업		수익사업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포스코타워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채드윅국제학교 컨벤시아 1단계 센트럴파크 인천포스코 고등학교	아트센터 인천 업무시설 : 부영송도타워, IBSE타워, 센트로드 경관 고도화 : 센트럴파크 주상복합 1차, 2차 등	공동주택(22개필지) 주상복합(5개필지) 상업시설-커널워크 ※ 수의계약

사업시행자	목적사업	수익사업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연세대학교)	<국제학술 연구 클러스터 단지 조성>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기숙사 포함) 세브란스병원 재정 지원	<1단계> 공동주택(3개필지) 주상복합(1개필지) 상업시설(1개동) ※ 수의계약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캠퍼스 단지조성> 한국뉴욕주립대 강의동, 한국조지메이슨대 강의동 켄트대학교 강의동, 유타대학교 강의동 예술대학 강의동, 멀티컴플렉스빌딩, 대강당, 학생식당,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교수아파트, 중앙도서관 등	주상복합(1개필지) ※ 국비·시비 지원 ※ 수의계약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	특급호텔(711실), 컨벤션시설, 부티크호텔 (58실), 예술전시공간, 플라자, 스파 등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허가 ※ 수의계약
RFKR 복합리조트	특급호텔(720실), 컨벤션시설, 쇼핑몰·공연장, 스파 및 고급 레스토랑 등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허가 ※ 수의계약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 6성급 호텔(650실), 가족호텔(350실), 뷰티 호텔(350실) · 2,000석 규모 대형 회의시설(13,300㎡) 및 중·소규모 회의시설 · 실내 테마파크 (1단계 : 패밀리 워터파크) · 대형아레나(15,000석 규모) · 리테일 샵 등 쇼핑시설(24,960㎡)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허가 ※ 제안공모
청라 영상·문화 제작단지	드라마제작 일반스튜디오, 특수 스튜디오, 스튜디오 지원시설 야외 촬영장(시대극 거리, 외국거리, 관공서 거리) 미디어센터, 문화상업 및 야외촬영시설	오피스텔(1개 필지) ※ 제안공모
청라 의료복합 타운	종합병원, 병원, 의과전문대학, 사무공간, 기숙사, 의료바이오 제조 연구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상 허가 부대시설, 메디텔,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1개 필지) ※ 제안공모

물론 연동형 개발 방식에 있어서 수익성이 적정하게 제한되었는지, 목적사업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사업자 선정 방식은 적정했는지 등 관리해야 할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청은 여러 시행착오 및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이슈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know-how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개발 방식은 국제 도시를 개발하는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며, 공익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도입하는 시설의 과급효과와 공익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목적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수익사업만 거론하며 ‘주거일색의 사업’, ‘오피스텔 타운 사업’ 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올바른 분석이 아닐 것입니다.

□ 수의계약 방식에 대하여

기업유치는 세계적으로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⑥항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 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표 2> 참조)

<표 2>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의계약 유치 추진 사례

분야	기업명	비고
서비스산업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시행자
	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뉴욕주립대학, FIT, 갠트, 조지메이슨, 유타)	
	글로벌캠퍼스 입주연구소 (스탠포드 연구소)	
	하나금융타운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 (잭니클라우스, 채드윅국제학교 등)	개발사업시행자
	코스트코 (송도, 청라)	
	RFKR 복합리조트	
	쉴레어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시행자

	BMW 드라이빙센터	
	왕산마리나	
	달튼 국제학교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라이크홈 기숙사	
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지노모도제넥신	
	안센백신	
	올림푸스코리아	
	싸토리우스코리아	
	생고뱅크코리아	
ITC	머크	
	헬러만타이툰	
	이구스	
	파이오락스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엔바이로테크놀로지	
	만도브로제	
	헨켈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아마다코리아	
	리탈	
	규델리니어텍	
	바이스트로닉코리아	
	오쿠마코리아	
	아이리스코리아	
	티오케이첨단재료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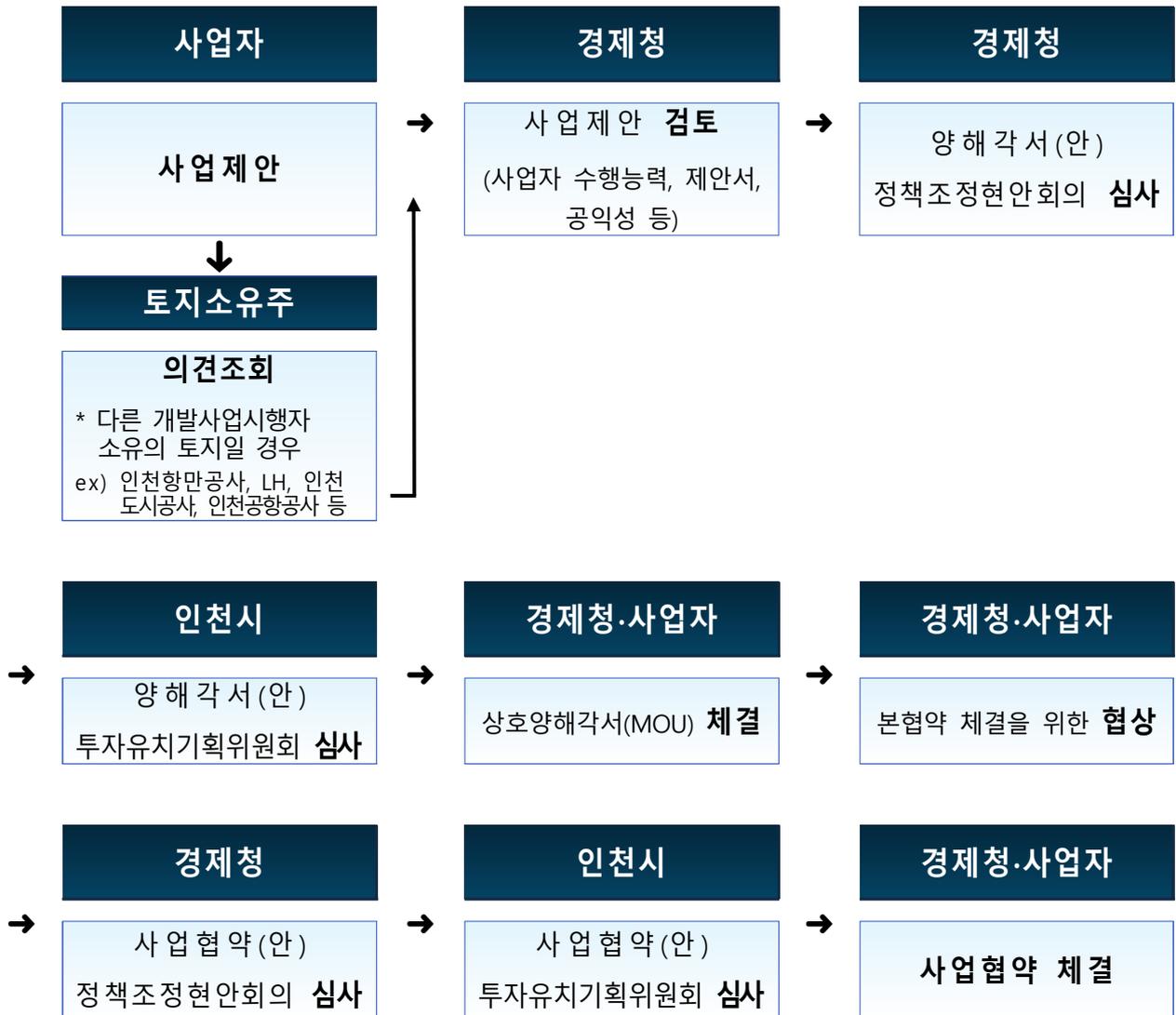
대체로 수의계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계약자 선정의 임의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투자유치 수의계약은 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 유치 목적사업에 대한 평가, 경제자유구역 조성 방향과의 부합성 등 토지가 이외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또한 여러 검증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제안서, 사업자 및 공익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후 경제청 내부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수의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해각서 체결을 하게됩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사업협약에 이르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후 도출된 사업협약안은 또다시 정책현안조정회의 의결,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날인을 하게됩니다. 특히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경자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조례로 따로 마련한 것으로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없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이기도 합니다. (※ 단순 상호협력 양해각서는 계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상호의사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투자유치 진행에 있어서 수의계약방식은 공모방식에 비하여 양해각서라는 불확정적인 협약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로 주무관청이 주도적으로 사업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협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 마치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정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함으로 경제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자법으로 보장된 방식이고 여러 경쟁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추진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제안사업 중 수의계약 방식 추진 절차



□ 민간제안 투자방식에 대하여

최근, 최초제안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짬짬이’, ‘짜고치는 고스톱’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제안을 받지 말고 용역을 통해 그 결과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용역을 통한 성과물 도출보다는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공모나 민간제안사업 방식이 훨씬 창의적이고 뛰어난 아이디어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 경험칙이고 세계적인 추세라 할 것입니다.

맨하탄의 허드슨야드 개발, 일본의 롯폰기 힐즈, 싱가포르의 베이에어리아(Bay Area)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세계적 도시에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창의력 있는 민간제안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권장되고, 실행되는 도시개발 모델이 정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제안자가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불공정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에서도 최초 민간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하여 더 좋은 의견은 없는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등 민간제안 사업에 있어서 최초 제안이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는 심지어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단순한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독려하고 권장하는 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사업계획, 우수한 시설 및 기업의 유치를 제안하는 사업자들을 특혜를 쫓는 사업자들이라 하고,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는 공무원들을 비리 공무원 으로 의심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민간제안을 하는 사업자는 사라질 것이며, 공무원들도 민간제안사업을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민간제안이 많이 접수되는 것은 국제도시 조성의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경제청의 핵심 업무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유치대상 기업, 기관, 시설을 유치하고 사업자와 미팅과 협상하는 것은 경제청 본연의 업무입니다.

유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시설들은 타 지자체 혹은 타 국가와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경제청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유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추진은 어려워지고 경제에서 뒤쳐질 것임이 명약관화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만나야할 의무가 있고 특히 해외 출장중에는 유치가능한 기관과의 미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식적으로 계획된 미팅을 수행한 것을 마치 숨겨진 특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의 정당한 투자유치 활동을 마치 비리인 것처럼 매도하여 경제청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투자유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명 과정에서 이미 비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투자유치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혜이고 제안공모는 불공정 하다면, 경제청의 투자유치 활동 및 민간제안사업은 차단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를계약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도시조성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일반 시·도·군·구와 동일한 도시개발 환경으로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래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첫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약 3,300여 개의 기업과 15개의 국제·UN기구를 유치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고 정주인구가 약 40만명에 이르는 등 괄목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같은 국제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갈길이 멀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 수준을 넘어 글로벌 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살고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 20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know-how를 토대로 법에서 보장한 개발방식과 수단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은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청은 인구 300만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명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과 성원을 호소드립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제도시의 건설이라는 책임감 하에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투자유치가 있는 곳에는 각종 뒷말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는 비판에 주민간 갈등과 불신이 겹쳐 수년간 계획하고 추진 해온 중요한 유치사업들이 무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특성상 모든 것을 선(先) 공개 할 수 없다는 특수성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인천, 시민과 미래만을 바라보고 국가적 사업에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진력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